



고용노동부

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」 및 「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」 일부 개정 안내

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·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 지원기간('20.9.15. 종료 예정)을 '21.3.31.까지 연장하기로 심의·의결되어 '20.8.24. 불임과 같이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연장대상 업종(8개)>

- 여행업, 관광운송업, 관광숙박업, 공연업, 항공기취급업, 면세점, 공항버스, 전시·국제회의업

<개정 주요내용>

-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'21.3.31.까지 연장
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

불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각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관계 중앙부처

주무관	<b>이원재</b>	행정사무관	<b>김경희</b>	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	<b>오기환</b>	지역산업고용정책과	전결 2020. 8. 26.
협조자							
시행	지역산업고용정책과-2425			접수	첨단항공과-2692		(2020. 8. 26.)
우	30117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5층(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)					www.moel.go.kr
전화번호	044-202-7407	팩스번호	044-202-8050	/ redoredo@korea.kr			/ 대국민 공개